

한화솔루션 ESG 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(ESG) 정책과 회사의 ESG 관련 각종 추진현황 등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는 위원총수 2/3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4조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회사의 ESG 활동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
 2. 주요 ESG 정책활동 검토 및 실행계획 심의
 - 가. E(환경)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
 - 환경경영을 위한 조직운영, 투자 등 혁신활동, 환경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
 - 용수·에너지, 원부자재, 폐기물 배출량 등 저감/재활용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 - 공급망 관리 목표 및 기타 세부 추진계획
 - 나. S(사회)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
 - 근로환경(급여수준, 교육, 복지 등), 인권경영정책(성평등 보장, 인원프로그램 등) 등 인적자원 관리 정책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 - 공급망(공정거래, 상생협력 등) 및 고객(공정거래, 서비스 제공원칙 등) 관리 목표 및 기타 세부 추진계획
 - 사회공헌 프로그램, 10억 이상 기부금 등 목표 및 기타 세부 추진계획
 - 다. G(지배구조)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
 -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권리 강화 및 주주환원정책 목표 및 기타 세부 추진계획
 -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활동의 목표 및 기타 세부 추진계획
 3. ESG 활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4. ESG 활동에 대한 정기(연 1회)/수시 평가 및 개선
 - 가. ESG 중장기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
 - 나. 위원회 심의·결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필요 사항 검토
 - 다. ESG 활동으로 인한 개선 정도 모니터링, 평가 및 지속 개선 필요과제 선정

5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 (보 고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간사 및 위원회 지원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ESG 사무국을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ESG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